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25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김 건 · 김기웅 · 김은혜
안철수 · 한지아 · 박충권
임이자 · 윤용근 · 조배숙
박정하 · 이달희 · 김상훈
최수진 · 이상휘 · 유의동
이소희 · 김대식 · 곽규택
안상훈 · 윤상현 · 최은석
유용원 · 이현승 · 김승수
김용태 · 최보운 · 김태호
(2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가사소송의 당사자 등 소송관계인은 소송기록에 기재된 주소 등 개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

그러나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이혼 등 가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험을 피해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임시거처로 피신하였더라도 별도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주소나 연락처 등이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있음. 특히 가정폭력 피해자는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하거나 가정폭력으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적시에 보호조치를 신청하기 어려울 수 있어 피해자의 신청을 전제로 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긴급임시조치,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임시보호명령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해자의 별도 신청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주소 등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그 밖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사소송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신설).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① 법원은 가사소송 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가 결정된 경우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된 경우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가사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10조의3(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조치) ① 법원은 가사소송사건의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소송관계인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u> <u>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가 이루어진 경우</u> <u>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가 결정된 경우</u> <u>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이 결정된 경우</u>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경우

② 법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협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163조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의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